#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A-19BL)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A-19BL)은 견본주택 관람을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hc-logebien.com) 견본주택 예약제 관람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 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인원 최소화와 더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관람은 인터넷 예약제로 실시하오며, 관람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www.hc-logebien.com)를 통해 사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관람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측정 등 예방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0.08.21.**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입니다.

※ 2020.06.19..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경기도 전체(일부 제외)로 확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경기 전역(일부 제외), 인천 전역(강화, 옹진 제외), 지방[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일부 제외)]
2. 투기과열지역 : 서울 전역, 경기{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인천(연수, 남동, 서구), 지방[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대구(수성구), 대전(동, 중, 서, 유성구)]}
3. 투기지역 : 서울(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에 따라 청약가점제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한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 10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 5년 |

| | | | |
|---|---|---|---|
|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 85초과 | 3년 |
| | 그 외 | 85이하 | 3년 |
| | | 85초과 | 1년 |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의거 청약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으로 확대, 공급질서교란자 청약제한기간 10년 일괄 적용)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1.) 현재 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1.) 현재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9.08.2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0.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20%를 우선공급(양주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에 거주한 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거주제한기간이 있는 주택건설지역인 경우 작성]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 내지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 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c-logebie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대출규제 안내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구(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이자를 일시에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모든 주택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

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02.09.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동법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hc-logebien.com)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사전방문예약 신청 후 실제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04.19.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br>(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br>(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 계약체결 |
|---|---|---|---|---|---|---|
| 일 정 | 08월 31일(월) | 09월 01일(화) | 09월 02일(수) | 09월 08일(화) | 09월 11일(금)<br>~ 09월 18일(금) | 09월 21일(월)<br>~ 09월 23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인터넷 청약<br>(08: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 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 10:00~17:00 | 10:00~16:00 |
| 장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br>▪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당사 견본주택 방문검수<br>-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br>※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br>※ 사전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 당사 견본주택<br>(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양주시 주택과 – 35138호(2020.08.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A19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동 총 424세대

[특별공급 127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7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계 | | |
| 민영 주택 | 2020000967 | 01 | 84.9934A | 84A | 84.9934 | 24.4615 | 109.4549 | 65.1876 | 174.6425 | 60.7237 | 178 | 18 | 18 | 36 | 5 | 77 | 101 | 10 |
| | 2020000967 | 02 | 84.9996B | 84B | 84.9996 | 25.9611 | 110.9607 | 65.1923 | 176.1530 | 60.7281 | 56 | 6 | 6 | 11 | 2 | 25 | 31 | 2 |
| | 2020000967 | 03 | 100.5232 | 100 | 100.5232 | 28.9075 | 129.4307 | 77.0985 | 206.5292 | 71.8190 | 190 | - | 19 | - | 6 | 25 | 165 | 8 |
| | 합 계 | | | | | | | | | | **424** | 24 | 43 | 47 | 13 | 127 | 297 | 20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단위세대 개요에 기재된 면적기준으로 소수점이하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 동별 (라인별)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분양가격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 금(30%) |
|---|---|---|---|---|---|---|---|---|---|---|---|---|---|---|---|---|---|
| | | | | | | | | | 1차 | 2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입주지정일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계약 30일이내 | 2020.12.21 | 2021.04.20 | 2021.08.20 | 2021.12.20 | 2022.05.20 | 2022.10.20 | |
| 84.9934A | 101동 1,2,3호 102동 1,2호 103동 2,3호 105동 1,2호 106동 3호 | 178 | 1층 | 2 | 113,996,500 | 256,003,500 | | 370,000,000 | 15,000,000 | 22,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37,000,000 | 111,000,000 |
| | | | 2층 | 10 | 113,996,500 | 267,003,500 | | 381,000,000 | 15,000,000 | 23,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114,300,000 |
| | | | 3층 | 10 | 113,996,500 | 276,003,500 | | 390,000,000 | 15,000,000 | 24,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117,000,000 |
| | | | 4층 | 10 | 113,996,500 | 288,003,500 | | 402,000,000 | 15,000,000 | 25,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120,600,000 |
| | | | 기준층 | 146 | 113,996,500 | 296,003,500 | | 410,000,000 | 15,000,000 | 26,000,000 | 41,000,000 | 41,000,000 | 41,000,000 | 41,000,000 | 41,000,000 | 41,000,000 | 123,000,000 |
| 84.9996B | 105동 3호 106동 2호 | 56 | 2층 | 2 | 114,004,700 | 264,995,300 | | 379,000,000 | 15,000,000 | 22,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37,900,000 | 113,700,000 |
| | | | 3층 | 2 | 114,004,700 | 273,995,300 | | 388,000,000 | 15,000,000 | 23,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116,400,000 |
| | | | 4층 | 2 | 114,004,700 | 285,995,300 | | 400,000,000 | 15,000,000 | 25,000,000 | 40,000,000 | 40,000,000 | 40,000,000 | 40,000,000 | 40,000,000 | 40,000,000 | 120,000,000 |
| | | | 기준층 | 50 | 114,004,700 | 294,995,300 | | 409,000,000 | 15,000,000 | 25,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40,900,000 | 122,700,000 |

| | | | | | | | | | | | | | | | | | |
|---|---|---|---|---|---|---|---|---|---|---|---|---|---|---|---|---|---|
| 100.5232 | 101동 4호<br>103동 1,4호<br>104동 1,2호<br>105동 4호<br>106동 1,4호 | 190 | 1층 | 4 | 134,825,700 | 255,613,000 | 25,561,300 | 416,000,000 | 15,000,000 | 26,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41,600,000 | 124,800,000 |
| | | | 2층 | 8 | 134,825,700 | 265,613,000 | 26,561,300 | 427,000,000 | 15,000,000 | 27,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42,700,000 | 128,100,000 |
| | | | 3층 | 8 | 134,825,700 | 274,703,909 | 27,470,391 | 437,000,000 | 15,000,000 | 28,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43,700,000 | 131,100,000 |
| | | | 4층 | 8 | 134,825,700 | 287,431,182 | 28,743,118 | 451,000,000 | 15,000,000 | 30,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45,100,000 | 135,300,000 |
| | | | 기준층 | 162 | 134,825,700 | 295,613,000 | 29,561,300 | 460,000,000 | 15,000,000 | 31,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46,000,000 | 138,000,000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 | 84.9934A | 84.9996B | 100.5232 |
|---|---|---|---|
|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 84A | 84B | 100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추가선택 유상옵션)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의 중도금, 잔금(미납이 있을 경우 연체료 포함)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호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Ⅱ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8.31.(월)**<br>(청약Home : 08:00~17:30)<br>(견본주택 : 10:00~14:00) | • 한국감정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br>※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br>•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에 한함) |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 | 84A | 84B | 100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 | 3 | 1 | - | 4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3 | 1 | - | 4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3 | 1 | - | 4 |
| | 중소기업근로자 | | | 3 | 1 | - | 4 |
| | 철거민 | | | 3 | 1 | - | 4 |
| | 장애인 | | | 3 | 1 | - | 4 |
| | **소 계** | | | **18** | **6** | **-** | **24**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 | 9 | 3 | 10 | 22 |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 9 | 3 | 9 | 21 |
| | **소 계** | | | **18** | **6** | **19** | **43**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br>(맞벌이120%이하)<br>[우선공급(75%)] |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30%) | 8 | 2 | - | 10 |
| | |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 5 | 2 | - | 7 |
| | | | 서울·인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 14 | 4 | - | 18 |
|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20%<br>(맞벌이130%이하)<br>[우선공급(25%)] |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30%) | 3 | 1 | - | 4 |
| | |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 2 | 1 | - | 3 |
| | | | 서울·인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 4 | 1 | - | 5 |
| | **소 계** | | | **36** | **11** | **-** | **4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30%) | | | 2 | 1 | 2 | 5 |
|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 | | 1 | 0 | 1 | 2 |
| | 서울·인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 | | 2 | 1 | 3 | 6 |
| | **소 계** | | | **5** | **2** | **6** | **13** |
| **합 계** | | | | **77** | **25** | **25** | **127**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이주대책 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군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br>•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br>가. 주택공급신청자<br>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br>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br>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구 분 | 양주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행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차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
| **당첨 동·호수 결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br>•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br>•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해당 세대수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br>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br>② ①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br>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br>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유의사항**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br>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8.12.11.)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기간 내 주택 소유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 시 2순위 해당)<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내방 전 방문예약 필수)<br>• 인터넷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참조)<br>• 방문접수(견본주택)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br>•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br>•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br>•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 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

| | |
|---|---|
| | 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br>•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br>•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공급신청자의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 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철거민,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 철거민(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토지보상과)<br>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br>국가유공자(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br>중소기업 근로자(경기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4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양주시) 및 수도권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의 비율로 공급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최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니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공급한다.

- 양주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 거주자(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 경기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순으로 선정합니다.
- 경재이 발생할 경우 양주시 및 아래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시 동점자 처리(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국토교통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4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나머지 50%를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나머지 50%를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br>(기준소득,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554,983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8,249,812원 | 8,905,541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665,980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9,899,774원 | 10,686,649원 |
| 일반공급<br>(상위소득,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20%이하 | 5,554,984원<br>~ 6,665,980원 | 6,226,343원<br>~ 7,471,610원 | 6,938,355원<br>~ 8,326,025원 | 7,594,084원<br>~ 9,112,900원 | 8,249,813원<br>~ 9,899,774원 | 8,905,542원<br>~ 10,686,649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30%이하 | 6,665,981원<br>~ 7,221,478원 | 7,471,611원<br>~ 8,094,245원 | 8,326,026원<br>~ 9,019,860원 | 9,112,901원<br>~ 9,872,308원 | 9,899,775원<br>~ 10,724,756원 | 10,686,650원<br>~ 11,577,203원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3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나머지 50%를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 ■ 일반공급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신청 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1.)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재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하나 양주시 1년 이상 계속(2019.08.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2020.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br>•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br>※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br>-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br>- 세대주일 것<br>-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br>-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br>※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유의 사항 |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br>•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으로 확대, 공급질서교란자 청약제한기간 10년 일괄 적용)<br>• 청약접수 방식<br>- 주택형별로 층,동,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br>(단, 1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br>•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br>•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게 제외됩니다.<br>• 중복 청약접수 관련<br>-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하며 동일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됩니다.<br>-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이 당첨만 인정됩니다.<br>•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br>[모집공고일 전일까지]<br>-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 : 큰 주택규모 청약 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br>- 청약부금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br>※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총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br>[모집공고일 당일까지]<br>-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 : 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br>※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 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양주시 => 의정부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양주시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br>[청약접수일 당일까지]<br>-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br>•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br>•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 구 분 | 양주시 및 기타지역(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지역)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양주시(1년이상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6개월 미만) | **1순위** | 전용 85㎡ 이하 | •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br>(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br>(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br>•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8.21.)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br>※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 | | 전용 85㎡ 초과 | •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br>(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br>(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br>•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8.21.)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br>※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br>(1) 세대주가 아닌 자<br>(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br>(3)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br>(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이상 ~ 9년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20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4 | 10년이상 ~ 11년미만 | 2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6 | 11년이상 ~ 12년미만 | 24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8 | 12년이상 ~ 13년미만 | 26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미만 | 28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미만 | 30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 | | 7년이상 ~ 8년미만 | 16 | | |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br>※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미만 | 10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미만 | 2 | 9년이상 ~ 10년미만 | 11 | |
| | | 1년이상 ~ 2년미만 | 3 | 10년이상 ~ 11년미만 | 12 | |
| | | 2년이상 ~ 3년미만 | 4 | 11년이상 ~ 12년미만 | 13 | |
| | | 3년이상 ~ 4년미만 | 5 | 12년이상 ~ 13년미만 | 14 | |
| | | 4년이상 ~ 5년미만 | 6 | 13년이상 ~ 14년미만 | 15 | |
| | | 5년이상 ~ 6년미만 | 7 | 14년이상 ~ 15년미만 | 16 | |
| | | 6년이상 ~ 7년미만 | 8 | 15년이상 | 17 | |
| | | 7년이상 ~ 8년미만 | 9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 항목별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구 분 | 내 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br>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br>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br>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br>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br>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외국인 직계존속 |

| | |
|---|---|
| |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br>※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br>-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br>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br>-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br>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선정 방법

| 구 분 | 내 용 |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r>•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철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br>-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br>•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8.2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며, 20%를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경기도에 2020.02.21.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r>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br>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br>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br>•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r>•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r>-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br>***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br>-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br>•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됨.<br>•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br>• 인터넷청약['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주체로 방문제출(견본주택)하시기 바랍니다.(특별공급·일반공급 예비입주자도 포함)<br>•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br>•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 |

| | |
|---|---|
| | 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br>•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자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br>•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br>•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r>•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 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 한 후라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소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 가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1.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2.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

## Ⅲ 신청일정, 장소 및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20.08.31.(월)<br>**(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br>**(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견본주택<br>: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번지 |
| **일반공급** | 1순위 | 2020.09.01(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br>(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 2순위 | 2020.09.02(수) 08:00~17:30 | |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일반공급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br>-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IV 당첨자 발표 및 구비서류

### ■ 당첨자 발표 및 사전서류 제출 일정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사전서류 제출 기간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 일시 : 2020.09.08.(화)<br>• 확인방법<br>-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당첨일로부터 10일간)<br>(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0.09.11.(금) ~ 2020.09.18.(금) (8일간)<br>(10:00 ~ 17:00)<br>• 장소<br>-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견본주택<br>: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번지 |
| **일반공급** | 1순위 | | |
| | 2순위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분양홈페이지(www.hc-logebien.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구분 | | 한국감정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0.09.08.(화) ~ 2020.09.17.(목)**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br>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0.09.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특별공급/일반공급)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
| 제출기한 | • 일시 : 2020.09.11.(금) ~ 2020.09.18.(금) 8일간 / 10:00 ~ 17:00<br>•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
| 제출장소 |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번지 |
| 유의사항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br>•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br>•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br>•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br>•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br>•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홈페이지 공지예정)<br>• 예비입주자의 경우 주택형 및 예비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br>•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특별공급 / 일반공급) | O | | 특별공급신청서<br>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br>**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O |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O |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O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O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O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O | | 인장 | 대리인 |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 (기관추천) | O | | 특별공급 대상 증명 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 다자녀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O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O |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 | | |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O | |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제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자녀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 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해당직장<br>-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br>-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br>(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br>-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br>-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br>- 법인등기부등본 | - 세무서<br>-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br>-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br>-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br>-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br>: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접수장소 |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비고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일반공급 (가점제,예비입주자) 및 부적격통보 받은자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
|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br>•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O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b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본인 |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V 계약체결 일정, 장소 및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특별공급 | 일시 : 2020.09.21.(월) ~ 2020.09.23.(수) (3일간 10:00~16:00) |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견본주택<br>(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번지) |
| 일반공급 | |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시 구비사항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본인 계약 시 | | 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O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요구하는 서류(개별) |
| | O |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
| | O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O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 | O | | 주민등록표등본(모두 포함하여 발급) |
| | | O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br>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 시<br>(본인 이외) | O | | 계약자 인감도장 |
| | O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 : 주택전시관 비치) |
| | O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 | O |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예:101동101호, 1-101)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 광주은행 | 1107-021-069005 | ㈜대광에이엠씨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음.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며,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2020.07.13. 이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이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세대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시 LTV·DTI 10% 우대 가능하니 해당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특히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대납(이하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및 2차 계약금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 축소 및 대출불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구입시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20.06.17. 발표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조치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구입시 1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기존 주택 처분 및 입주의무 강화 등 예외 허용 조건이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일입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양주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예정일 : 2023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주택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됨.

## VI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발코니 확장 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8,590,000 | 1,000,000 | 7,590,000 | 공사부위 견본주택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
| 84B | 10,240,000 | 1,000,000 | 9,240,000 | |
| 100 | 11,770,000 | 1,000,000 | 10,770,000 |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069027 | ㈜대광에이엠씨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임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 내 목장호류, 가구류, 유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발코니 외부창호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 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플러스 옵션 품목(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타입 | 선택안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실내기 | 실외기 |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 84A<br>84B<br>100 | 일반<br>무풍그릴타입 | 1안(2대) | 거실+안방(침실1) | 3,300,000 | 330,000 | 2,970,000 | AJ072MB1DBC1 거실<br>AJ023MB1DBC1 안방(침실1) | AJ030MXHNBC1 |
| | | 2안(4대) |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 | 5,800,000 | 580,000 | 5,220,000 | AJ072MB1DBC1 거실<br>AJ023MB1DBC1 안방(침실1)<br>AJ020MB1DBC1 침실2,3 | AJ050MXHNBC1 |
| | | 3안(5대) | 거실+안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 6,900,000 | 690,000 | 6,210,000 | AJ072MB1DBC1 거실<br>AJ023MB1DBC1 안방(침실1)<br>AJ020MB1DBC1 침실2,3, 알파룸 | AJ050MXHNBC1 |

2) 주방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제품명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B, 100 | 하이브리드 쿡탑 | 인덕션2, 하이라이트1 (CIHR-D303FB) | (주)쿠첸 | 500,000 | 50,000 | 450,000 | |
| | 비스포크 냉장고 &<br>비스포크 김치냉장고 | 비스포크 냉장고 (RF61T91C3AP)<br>비스포크 김치냉장고 (RQ33R7422AP) | 삼성전자(주) | 4,550,000 | 455,000 | 4,095,000 | |
| | 의류관리기 | 고급형 에어드레서 (DF10R9300DG) | 삼성전자(주) | 1,550,000 | 155,000 | 1,395,000 | |

3) 중문 및 현관청정시스템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84B, 100 | 현관 중문(3연동) | 1,100,000 | 110,000 | 990,000 | ▣ 현관청정시스템<br>- 에어샤워+에어브러쉬 (AS150+DSC-300)<br>- (주)그렉스전자 |
| | 현관 중문(3연동) + 현관청정시스템 | 1,750,000 | 175,000 | 1,575,000 | |

※ 현관청정시스템은 중문 옵션선택 세대만 선택 가능 함.

4) 태양열 차단필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제품명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태양열 차단필름 (Ceramic 50) | 후퍼옵틱코리아 | 2,300,000 | 230,000 | 2,070,000 | |
| 84B | | | 2,700,000 | 270,000 | 2,430,000 | |
| 100 | | | 2,800,000 | 280,000 | 2,520,000 | |

5)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기본형(ㄷ자형) 주방선택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주방벽) | 3,900,000 | 390,000 | 3,510,000 | |
| | 확장형( ㅡ자형) 주방선택 | | 4,100,000 | 410,000 | 3,690,000 | |
| 84B | | | 3,900,000 | 390,000 | 3,510,000 | |
| 100 | | | 4,700,000 | 470,000 | 4,230,000 | |

6) 폴리싱타일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폴리싱타일 (거실바닥+주방바닥) | 8,000,000 | 800,000 | 7,200,000 | |
| 84B | | 6,500,000 | 650,000 | 5,850,000 | |
| 100 | | 8,000,000 | 800,000 | 7,200,000 | |

7) 대형 팬트리 및 대형 고급 드레스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84A | 확장형( ㅡ자형) 주방선택 대형 팬트리 | 2,000,000 | 200,000 | 1,800,000 | 확장형( ㅡ자형) 주방선택 시 필수 선택 |
| 84B | 대형 팬트리 | 990,000 | 99,000 | 891,000 | |
| 100 | 알파룸 팬트리 | 990,000 | 99,000 | 891,000 | |
| | 대형 고급 드레스룸 + 슬라이딩도어(1개소) | 8,300,000 | 830,000 | 7,470,000 | 슬라이딩도어<br>안방, 파우더룸 사이 설치 |

8) 침실3 붙박이장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비고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전타입 | 침실3 붙박이장 | 1,100,000 | 110,000 | 990,000 | |

9)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계좌 | 광주은행 | 1107-021-069027 | ㈜대광에이엠씨 |

- 상기 계좌는 플러스 옵션 품목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임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 플러스 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품목은 아파트에 실제 시공되는 제품과 제조사 및 모델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설치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플러스 옵션 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습니다.
- 확장 / 비확장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시스템에어컨 선택하는 경우 거실의 스텐트형, 안방(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해당 콘센트는 설치하지 아니함)
- 폴리싱타일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
|---|---|---|
| 바닥재 | <마루>거실, 주방, 복도, 안방(침실1), 침실, 드레스룸,<br><타일, 인조석>현관<br><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바닥 |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
| 벽, 천장 |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br>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가변형벽체 |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br>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기구 |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가변형벽체부위 제외), 홈네트워크 월패드 |
| 욕실 | 타일(바닥,벽),천장,젠다이(인조석), 재료분리대,<br>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br>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br>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
| 주방가구 | 주방TV,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수전,<br>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기타 악세사리류 | 설비배관, 전기배관, 통신배관, 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배관),<br>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
| 창호 |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 창틀, 창짝(하드웨어 제외), 현관방화문,<br>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
| 가구 및 기타사항 | 현관신발장,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복도창고 가구류(해당타입), 시스템선반(해당타입) |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침실1]) |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은 기본형(비확장형) 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옵션금액[천원미만 절사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84A | 84B | 100 | 비 고 |
|---|---|---|---|---|
|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 27,060,000 | 27,762,000 | 32,980,000 | -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시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Ⅶ 기타 유의사항

###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예치금 잔액을 충족 시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민원관련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양주 회천신도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A-19BL)"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동표기는 양주시청 및 양주 회천신도시 계획사항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면적이 상이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또한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설계변경, 각종 평가심의 결과 등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및 주차장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5동, 106동 인근 지하1층,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옥상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저층 일부세대는 미관/조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양주시내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샤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실면적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Ⅷ 단지 여건 사항

■ 단지외부여건

- 양주회천지구 개발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써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위 시행자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양주회천지구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신축 및 사업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 및 단지 주변 완충·경관녹지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학교, 근린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 발생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양주회천지구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주변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는 개방형 녹지로 산책로 등이 조성 될 예정이나 도시계획시설로 당 부지 외 대지이므로, 입주민 요구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완충녹지, 수변공원 등의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당사와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측 완충녹지의 자전거도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성되어 당사의 모형, CG, 일부 판촉물 등에 표현하였으나,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계획에 따라 변경 또는 철거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주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 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서울지하철 1호선 지상철 선로 및 단지 북동측에 서울지하철 1호선 덕계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덕계천 수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도로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의 교육시설 부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내의 교육시설 조성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관련 유의사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회천택지지구 내 초·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초등학고 통학구역 및 중학군(중학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은 양주시 기존 고등학교 및 지구 내 신설계획 고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아수용 계획은 회천택지개발 지구 내 병설유치원 등 택지개발 지구 내 설립 될 어린이집 등에 배치예정이며 단설유치원 개교는 2023년 9월 이후에 가능 예정이며 이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반경 700m 이내에 덕계중, 덕산초, 도둔초가 있으며, 초4, 중4, 고2 신설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전입 현황과 교육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및 경기도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설립이 변경(지연) 또는 미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신설학교 미설립 시 원거리 학교로 임시수용될 수 있고, 향후 추가 학교설립 요인 발생 시 통학구역을 조정(분리)하여 새로운 시설학교로 취학(통학)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양주 회천지구 A-19BL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은 개발 지구 설립학교 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인근 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나, 인근학교 학생 배치여건, 학생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 공고 사항, 교육부 학교설립 승인 심사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변경 지연되거나 설립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원거리 학교로 임시수용 될 수 있고 향후 추가 학교설립 용인 발생 시 통학구역을 조정(분리)하여 새로운 신설학교로 취학(통학)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내부여건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국계법, 건축법, 주택법 등 사업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각종 홍보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축척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주체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부 조성 레벨에 따라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보강토블럭쌓기 설치로 미관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설계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경계의 단차구간에 설치 예정인 보강토블럭의 높이, 설치구간 등은 본 공사 시 변결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저층부 일부에 외벽마감은 화강석 마감 시공 예정이며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특화 디자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본 공사 시 색채자문과 교통성 검토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옥상바닥 및 APT 지반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 열기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수증기 발생,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배면 및 측면에 제연휀룸 D/A가 설치되며, 1층 및 저층세대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북측 106동 후면에 진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소방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그 위치나 구조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쓰레기분리수거장 위치가 사업승인도서와 다르게 설치될 예정이며, 전시모형으로 전시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1동 2호세대 정면, 103동 2호세대 배면, 104동 배면, 105동 1호세대 측면, 106동 2호, 3호세대 정면 설치 예정)
- 106동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 동선은 필로티를 통해 1층으로만 진입이 가능함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1층 배면 진입 불가함)
- 사업부지 경계에 레벨차이 극복을 위한 보강토블럭이 설치되며, 시공범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레벨 계획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조경석쌓기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휘트니스센터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 등의 표기는 집기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에 명기된 집기류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인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저층부 마감(자재종류, 크기, 색상, 시공높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전면 및 각 점포별로 바닥의 높이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에 의해 각 동별로 주동 진입방식이 상이 (필로티 진입, 지하PIT 진입, 1층 진입) 하고, 각각 출입구의 디자인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계획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또는 개발사업주체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법면 및 옹벽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디자인,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이며, 택배차량 지하층 출입을 고려하여 유효 천장고는 2.7M로 계획 되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지하1층 4대) 및 무인택배보관함(구역별)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디자인 및 싸인, 외관몰딩, 필로티입구,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마감,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이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6동 등 단지 주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권 침해가 높을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생활 환경권이 상의함으로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세대는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휀이 옥상 및 외부의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발전기실/열교환실/저수조/우수조, MDF실/방재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분양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안내된 인쇄물과 일부 디자인이 변경되어 설치 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저층(1,2층) 및 최상층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발코니와 거실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수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공간은 서비스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동별 1개소의 위치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다소 가깝게 인접한 세대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변 동출입구에서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하여 냄새·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부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모형, 분양 카달로그, 지하주차장 평면도, 부대시설 배치도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의 보행자 도로 선형, 조경식재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아파트·근린생활시설 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 전용주차장은 지상1층 106동 후면에 8대(장애인주차장 포함)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 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 되었으나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거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주동 하부로 지하주차장 출입이 계획되어, 이로 인해 저층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각종 설비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및 근생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특히,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시공 중 위치, 형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침실1)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 형태 모양),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조망,일조,진동,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등의 입, 출자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안내된 인쇄물이나 이미지에 표시되어있지 않으나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에어컨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I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단위세대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과정에서 일부세대는 공사기간 중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니트와 좌우 대칭된 형태로 시공되므로 계약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견본주택과 달리 동일평면이어도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대칭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실의 크기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 환기시스템(설비시설노출), 분전반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은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필요한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침실, 욕실, PD 등)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건식벽체(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축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욕실가구 및 욕조에 접하는 면은 타일 및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욕실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⑤ 주방가구 상부, 하부, 측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⑥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상부, 하부, 측면, 뒷면은 별도의 난방코일, 마감재가 시공 되지 않습니다.
  ⑦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당해층 배관에 대한 상세설계가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상 사유로 핀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발코니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사용상 등의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매립형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대피소 등 외부창호, 그릴,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일부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바닥 단차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이 설치되는 현관 바닥, 팬트리, 욕실, 주방, 발코니 등의 타일 나누기 및 매지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재질은 타일로서 별도의 줄눈이 없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기성품 자기질 타일이지만 문양 및 명도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이질재질 접합부 (콘크리트, 조적) 가 있으며, 크랙 유도를 위한 줄눈이 추가되어 타일 시공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삼성 스마트홈 IOT서비스는 웹전용이며, 솔루션 및 제품구성, 출시시기, 보유하신 가전제품의 각 회사정책, 사용자환경에 따라 구현기능과 서비스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및 전용 와이파이 연동킷은 제공되지 않음)
- 엔지니어드 스톤 나누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미 선택시 주방벽은 타일이 시공되고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마감재의 두께차이로 인하여 창호·문선·주방 상부장 및 하부장 외의 사이즈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측벽세대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단열재의 두께(약150mm)차이로 대피공간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창은 계단실에 사업승인 도서에 준하여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침실1), 침실2,3,, 주방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장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장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변형 벽체(건식고정벽체)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성능 등이 취약 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복도, 승강기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승강기 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PL창호 외측 색상은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84B 확장형세대의 주방가구 레이아웃이 사업승인도서와 상이 (도서:ㄱ자형+아일랜드, 모형,CG:ㄷ자형) 함을 인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84A 확장형세대의 주방가구 ㅡ자형 레이아웃이 선택형으로 추가되어 착공 후 설계변경 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84B 확장형세대의 침실1, 알파룸의 창호설치위치, 개폐방향을 사업승인도서와 다르게 계획하였고 추후 설계변경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0타입 고급형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알파룸, 드레스룸에 사각형 조명기구가 설치되고, 미선택시 (가변형벽체 구분 시) 알파룸에는 일반 침실등기구, 드레스룸에 사각형 조명기구가 설치됩니다.
- 100타입 고급형 대형드레스룸 선택시 벽체도배는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 거실, 침실2 통합시 천장등박스 라인, 조명기구가 변경 (분리시 원형등기구, 통합시 사각형등기구) 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 설비**

- 아파트 난방은 지역열원을 이용한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입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에 욕실 배기용 무동력 팬은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욕실 직배기용 덕트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상부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집광판의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각종 설비배관(급수,환기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붕 우수드레인 및 바닥 배수드레인이 사용상 및 시공상의 개선으로 창분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변경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설계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의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3,4호라인, 106동 1,2호라인은 계단실, E/V등 코어계획에 따라 E/V홀에서 자연채광이 불가함을 인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공급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 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제공되는 인쇄물 및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비상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천장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커튼, 집기, 이동식 가구 및 페이브릭, 가전, 악세서리 기타 전시소품류 등)의 미확인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도서의 주방가구, 위생도기, 욕실 수전류 등의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도서에 표현된  마감재(주방가구, 일반가구, 위생도기, 수전, 가전류, 각종 창호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강마루는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늬, 색상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품의 혼용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식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옵션사항 및 전시품목들은 견본주택 확인 및 포함여부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 시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X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의 적용)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구 분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 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 고효율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 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 용 |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 적 용 | 세대내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 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 용 | 단지내 부속동 공용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 | |
|---|---|
| 건축물명 |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A19블럭 공동주택 |
| 건 축 주 | ㈜대광에이엠써 |
| 준공(예정)일 | 2023년 4월 21일 |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9BL |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9층 / 424세대 |
| 연 면 적 | 81,233.100B ㎡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
| 설 계 자 | ㈜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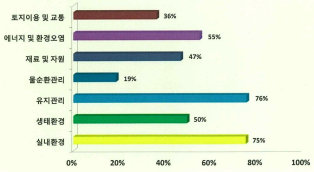
| | |
|---|---|
| 인증번호 | 제2020 - 2788호 |
|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유효기간 | 2020.7.20. ~ 사용승인일 |

**[인증 등급]**

| | |
|---|---|
| 인증등급 | 일반등급(공동주택) |
|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
| |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0년 7월 2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 확인

##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A19블럭 공동주택
2. 신 청 자: ㈜대광에이엠써
3. 대 지 위 치: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9BL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 |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나. 구조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내구성 | ★ |
| 2. 가변성 | ★★ |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 2. 경도한 지하개발 지양 | 해당없음 |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해당없음 |
| 4. 일조권 간접향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장치 | ★ |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해당없음 |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해당없음 |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16. 빗물관리 | 해당없음 |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해당없음 |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다. 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20. 인접한 녹지축 조성 | 해당없음 |
| 21. 지반지반 녹지율 | ★★ |
| 22. 생태면적률 | ★★★ |
| 23. 비오톱 조성 | 해당없음 |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해당없음 |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 |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 |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 |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 |
| 9. 단위세대의 사생적 악자배려 | ★ |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12. 세대 내 빌트 확보율 | ★ |
| 13. 홈네트워크 홈정보시스템 | ★★ |
| 14. 방범안전 콘텐츠 | ★★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감지 및 경보설비 | ★★ |
| 2. 제연설비 | ★★ |
| 3. 내화성능 | ★ |
| 4. 수평피난거리 | ★★★ |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6. 피난설비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7월 2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 | | |
|---|---|---|
| 건축물명 | : |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A19블럭 공동주택 |
| 준공연도 | : | 202304E1 |
| 주 소 | : | 경기도 양주시 회천지구 A19BL |
| 층 수 | : | 지하 2층 지상 11~29층 (63개동) |
| 연면적 | : | 81233.100B(㎡) |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 | 공동주택 |
| 설계자 | :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인증개요**

| | |
|---|---|
| 인증번호 : | 20-주-에-1+-0123 |
| 평가자 : | 이용희 |
| 인증기관 :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 운영기관 : | 한국에너지공단 |
| 유효기간 :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요구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 등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 배출량 |
|---|---|---|---|---|---|
|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 85.5 | 에너지효율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낮음 | 1+ |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 23.3 |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 구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
|---|---|---|---|---|
| 냉방 | 0.0 | 0.0 | 0.0 | 0.0 |
| 난방 | 42.1 | 54.9 | 42.4 | 9.4 |
| 급탕 | 30.7 | 36.2 | 26.6 | 6.0 |
| 조명 | 12.7 | 12.7 | 35.0 | 6.0 |
| 환기 | | 4.0 | 10.9 | 1.9 |
| 합계 | 85.5 | 107.7 | 114.9 | 23.3 |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07 월 17 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2020-101-067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 | | | |
|---|---|---|---|
| 신청인 | | 이 름 | (주)대광에이엠씨 |
|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빙타운로 106, 8823동 101호 (이의동, 광교대광로제비앙) |
| 건축물 | | 이 름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지구 A19 외 0필지 |
| |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19 |
| 인증내용 | | 구 분 |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
| | 인증등급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 | 홈네트워크건물 | ☐ AAA(홈IoT) ☐ AA ☐ A |

2020년 07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통신감리 |
|---|---|---|---|---|
|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진이앤씨 | 주식회사 한성기술단 | 세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세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 감리금액 | 1,366,667,500 | 420,300,000 | 63,300,000 | 105,6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의제5항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천원, VAT포함)

| 항 목 | | 공 종 | 금 액 | 항 목 | | 공 종 | 금 액 | 항 목 | | 공 종 | 금 액 |
|---|---|---|---|---|---|---|---|---|---|---|---|
| 택지비 | | 택지매입원가 | 45,125,452 | 공사비 | 건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2,781,000 | 공사비 |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 1,192,000 |
| | | 기간이자 | 888,846 | | | 용접공사 | 367,000 | | | 난방설비공사 | 1,462,000 |
| | | 필요적 경비 | 2,357,895 | | | 조적공사 | 439,000 | | | 가스설비공사 | 928,000 |
| | | 그밖의 비용 | 5,526,454 | | | 미장공사 | 1,427,000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219,000 |
| | | 계 | 53,898,647 | | | 단열공사 | 1,321,000 | | | 특수설비공사 | - |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468,000 | | | 방수,방습공사 | 502,000 | | | 공조설비공사 | - |
| | | 흙막이공사 | 535,000 | | | 목공사 | 2,710,000 | | 그밖의 공종 | 전기설비공사 | 6,190,000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가구공사 | 3,411,000 | | | 정보통신공사 | 4,604,000 |
| | | 옹벽공사 | 508,000 | | | 금속공사 | 751,000 | | | 소방설비공사 | 5,077,000 |
| | | 석축공사 | - | | | 지붕 및 홈통공사 | 409,000 | | | 승강기공사 | 924,000 |
| | | 우,오수공사 | 342,000 | | | 창호공사 | 3,086,000 |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3,639,050 |
| | | 공동구공사 | 195,000 | | | 유리공사 | 852,000 | | | 이윤 | 6,150,000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33,000 | | | 타일공사 | 1,047,000 | | 계 | | 82,589,050 |
| | | 도로포장공사 | 504,000 | | | 돌공사 | 848,000 | 간접비 | 설계비 | | 729,395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203,000 | | | 도장공사 | 933,000 | | 감리비 | | 1,955,868 |
| | | 정화조시설공사 | 232,000 | | | 도배공사 | 1,368,000 | | 일반분양시설경비 | | 5,505,220 |
| | | 조경공사 | 2,895,000 | | | 수장공사 | 1,539,000 | | 분담금 및 부담금 | | 5,262,957 |
| | | 부대시설공사 | 1,265,000 | | | 주방가구공사 | 2,111,000 | | 보상비 | | - |
| | 건축 | 공통가설공사 | 1,629,000 | | | 잡공사 | 1,108,000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 14,940,412 |
| | | 가시설물공사 | 2,437,000 |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1,332,000 | | 계 | | 28,393,852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937,000 | | | 급탕설비공사 | 548,000 | 그밖의 비용 | | | 16,939,424 |
| | | 철골공사 | 211,000 | | | 오배수설비공사 | 820,000 | 합 계 | | | 181,820,973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내용**

| 보증기간 | 보증금액(원) | 보증서 번호 |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br>(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127,276,800,000원 | 제07812020-101-0001500호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1.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3.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PF대출 만료 전 대출금의 전부를 상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피에프금융센터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대광건영으로 변경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사업주체 | 시공사 |
|---|---|---|
| 상 호 | ㈜대광에이엠씨 | ㈜대광건영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8823동 101호(이의동, 광교대광로제비앙)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륵동) |
| 법인등록번호 | 135811-0222786 | 200111-0160633 |

**▣ 견본주택 홈페이지 주소 : www.hc-logebien.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83번지 양주 회천 덕계역 대광로제비앙 견본주택**
**▣ 분양문의 1522-363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